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한 출석 인정 요청 절차 매뉴얼

학생 매뉴얼

* <mark>본 시스템은 코로나19 **확진에 따른 격리**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에만 사용</mark>합니다.

- 0

	Quick Mo			
	1	다이페이지	청강신청	
	교로나19	FAQ		
🖖 조선대학교 e-Class System - 프로필 1	- Microsoft Edge			
https://clc.chosun.ac.kr/ilos/s	t/main/covid_surv	rey_view_form.acl		
제목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려	리로 인한 출석 인정	요청		

•	https://clc.chosun.ac.kr/ilos/st/main/covid_survey_question_list_form.acl?CO_SURVEY_SEQ=1	A»
1. 학성	행(본인)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까?	
0		
\bigcirc	H오	
2. 학성	방(본인)은 확진에 따른 격리 또는 검사 기간 동안 시간표에 맞춰 일자별로(1일 1회) 동 시스템을 통해 출석인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	
0	1	
\bigcirc	H오	
3. 학성 최종	방(본인)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진에 따른 격리 또는 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만 등 출석이 인정됩니다.	
- 증 관직	빙서류 : 방역당국으로 받은 자가격리통지서, 문자, SNS(카카오톡 등), 이메일, 진단서 등 확진에 따른 격리 또는 검사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객 q 자료 제출	
* 2	·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능	
0		
0	H오	
4. 제클	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될 시 성적평가(F 처리 등)에 불이익,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	
0		
	니오	

0 X

_

🖖 조선대학교 e-Class System - 프로필 1 - Microsoft Edge

1. 출석인정요청은 학생(본인)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아,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.

* 본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에만 사용합니다.

* 보건소 또는 병.의원에서 전문가가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확진에 따른 격리기간동안 출석인정 가능(본 시스템 이용) * 보건소에서 시행한 PCR검사 또는 병.의원에서 전문가가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시 검사기간동안 출석인정 가능(기존 출석인정 요청 방식 유 지)

2

자가진단시작 >

* 본인 자가키트 검사 시 출석인정 불가능

2. 학생은 즉시 대학 보건팀 또는 해당 교학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
보건팀 230-6080 글로벌인문대학 230-6503, 6903 자연과학.공공보건안전대학 230-6602, 6985, 6072

법사회대학 230-6703, 6762 경상대학 230-6802, 6803 공과대학 230-7007, 7073

IT융합대학 230-6037, 6038 사범대학 230-7302, 7303 미술체육대학 230-7802, 7401

미래사회융합대학 230-7969, 608-5847 기초교육대학 230-6192, 6178

의과대학 230-6396, 6334

치과대학 230-6866, 6868 <u> 약학대학 230-6363</u>

확인 🗌

학생 매뉴얼



[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한 출석 인정 요청] 팝업 창이 나타나며, 내용 확인 후 확인 체크 및 자가진단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.

3 [자가진단] 팝업 창이 나타나며, 진단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.

• 1일 1회 출석인정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제출한 증빙자료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교원 매뉴얼

* <mark>본 시스템은 코로나19 **확진에 따른 격리**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에만 사용</mark>합니다.



1 출석부 확인 시 학생의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**안전, 격리, 미제출**이 표기되며, <mark>격리 표기 학생만 출석인정</mark> 으로 처리합니다.

- 안전 : 해당 없음 / 격리 : <mark>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한 출석인정</mark> / **미제출 :** 해당 없음
- <mark>증빙서류</mark>를 받고, <mark>사실여부 확인 후 최종 출석을 인정</mark>해주시기 바랍니다.

2 출석 인정 사유는 <mark>학생의 입원 치료</mark>를 선택합니다.

교원 매뉴얼

- 증빙서류 접수 방법

1 종이 문서 접수



3 사이버캠퍼스 강의실 게시판을 이용한 접수(열린게시판 또는 이름을 변경하여 접수)

